

부 동 산(토 지) 매 매 계 약 서(안) - 3번 물건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토지)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부동산(토지)의 표시

No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도면 상 표기번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40-4	임야	14,439	2지역
합 계				14,439	

* 도면 상 표기번호를 포함한 부동산(토지)의 표시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 이 름 : 학교법인 명지학원 법률상 관리인 이사장 현세용/명지대학교 총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61-20

법인등록번호 : 110131-0000498

매 수 인 이 름 : _____

주 소 : _____

법인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제1조(매매대금 및 납부) ①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_____ 원 (₩ _____)

계 약 금 ₩ _____ 원은 계약체결일에 주고,

잔 금 ₩ _____ 원은 2021년 월 일까지 주기로 한다.

* 입금계좌 : 하나은행 842-910002-08504(예금주 : 명지대학교)

②매수인이 제1항에 정한 **잔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완납하는 날까지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법정이자율(연 6%)에 의한 지연이자를 매도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3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책임 등) 매각대상 부동산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매각토지상의 건물, 공작물, 지하 매장물로 인한 토지 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 매도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본 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동산, 가설건축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장물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등의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기한 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매수인이 본 부동산의 향후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사유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본 부동산 지상에 있는 한국전력 송전 철탑 및 선하지 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에 관하여 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기 지급받은 보상금은 매도인에게, 위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발생한 보상금은 매수자에게 각 귀속된다.

③「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임도 준공일(부분별 준공년도 상이)로부터 5년 이내에 본 부동산의 임도를 매수인이 폐지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 이로 인한 매도인의 모든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환하여야 하는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본 부동산의 취득, 등기, 등록 등이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⑤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을 기준으로 이후 부과분은 매수자가 부담하고,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용승낙일 혹은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도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매수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 등의 사유발생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책임지고 시행하고 미시행시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관습에 의한다.

2021년 월 일

매도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법률상 관리인 이사장 현세용 (서명 또는 인)

명지대학교 총장 (서명 또는 인)

매수인 _____ (서명 또는 인)